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10
----------	-------

발의연월일 : 2026. 9. 2.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김승수
김예지 · 김태규 · 이종배
김용태 · 김기현 · 정동만
강명구 · 박정하 · 김상훈
최은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의료기관 동행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5(의료기관 동행 지원)</u> ①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②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